■ 지방세법 시행규칙[별지 제17호서식(전산용 1)] <개정 2023. 12. 29.> (앞쪽)

☜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.

우체국

바코드 18㎜
음성변환용(외부)

**보내는 사람**

| 과세번호 | | | |
|---|---|---|---|
| 담당자 | | 문의처 | |

**받는 사람**

우편반송용
바코드 17㎜
우편반송용

| 과 세 근 거 |
|---|
| |

바코드 18㎜
음성변환용(내부)

| 납 부 장 소 |
|---|
| 전국 은행, 우체국, 새마을금고, 신용협동조합, 산림조합 |

| 납부지연가산세 |
|---|
| 「지방세기본법」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지방세액의 3%가 부과되고, 해당 지방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(최대 60개월까지) 그 지방세액의 0.66%가 추가로 부과됩니다.<br><br>※ 계산식<br>납기 내 지방세액 + 납부지연가산세(납기 내 지방세액의 3%) + 납부지연가산세(납기 내 지방세액 × 0.66% × 경과월수) |

지방자치단체 활용란

※ 지방세 납부방법 안내 등

∞ 시·군 _____ (수납은행 확인용)

납세자:

| 기관번호 | 세목 |
|---|---|
| | |

| 납세연월기 | 과세번호 |
|---|---|
| | |

전자납부 번 호

납기 내: 까지

| 세 목 | 납기 내 금액 |
|---|---|
| | |
| | |
| | |
| | |
| 합 계 | |

납기 후: 까지

| 납기 후 금액 | |
|---|---|

수납은행용 바코드
수납용

지방자치 단체의 장 직인

∞ 시·군

**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( 분)** (납세자용)

| 납세번호 | 과세기관 | 검 | 회계 | 과목 | 세목 | 연도 | 월 | 구분 | 읍면동 | 과세번호 | 검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| | | | | | | | | |

납 세 자: 납세자번호:
주 소:

지 방 세

과세대상:

수납용 바코드
수납용

| 세 목 | 납기 내 금액 | 납기 후 금액 | 부과내역(과세표준) | 세율 |
|---|---|---|---|---|
| | | | | |
| | | | | |
| | | | | |
| | | | | |
| 합 계 | | | | |

| 납기 내 |
|---|
| 까지 |

| 납기 후 |
|---|
| 까지 |

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.
년 월 일 년 월 일

담당자: 문의처:

※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수납인

전자납부 번 호

210㎜×297㎜(CP지 90g/㎡)

## 유의사항

1. 지방세액 산출근거

| | |
|---|---|
| 과세근거 | ▪「지방세법」제23조제2호, 제24조제2호 및 제34조부터 제39조까지 |
| 납세의무자 | ▪「지방세법」제24조제2호에 따른 면허를 받는 자(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) |
| 납부지연가산세 | ▪ 「지방세기본법」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3%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, 납세고지서별·세목별 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.66%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(최대 60개월까지)됩니다.<br>※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|

2.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독촉장(50일 이내)이 고지되며, 독촉장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의 압류 등 체납처분을 받게 됩니다.

3.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(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)부터 90일 이내에 과세관청(시·군세의 경우에는 시장·군수에게, 시·도세의 경우에는 시·도지사에게)에 이의신청 또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※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.

■ 지방세법 시행규칙[별지 제17호서식(전산용 2)] <개정 2023. 12. 29.>

(앞쪽)

☜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.

**보내는 사람**

바코드 18㎜
음성변환용(외부)

| 과세번호 | | | |
|---|---|---|---|
| 담당자 | | 문의처 | |

**받는 사람**

우편반송용
바코드 17㎜
우편반송용

| 과 세 근 거 |
|---|
| |

| 납 부 장 소 |
|---|
| 전국 은행, 우체국, 새마을금고, 신용협동조합, 산림조합 |

| 납부지연가산세 |
|---|
| 「지방세기본법」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지방세액의 3%가 부과되고, 해당 지방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(최대 60개월까지) 그 지방세액의 0.66%가 추가로 부과됩니다.<br><br>※ 계산식<br>납기 내 지방세액 + 납부지연가산세(납기 내 지방세액의 3%) + 납부지연가산세(납기 내 지방세액 × 0.66% × 경과월수) |

## 자동계좌이체 납부 통지서

귀하께서 납부하실 지방세는 아래 신청하신 거래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되어 납부됩니다.

바코드 18㎜
음성변환용(내부)

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:
예 금 주:
출 금 계 좌:
성 명:

**※ 자동이체일은 년 월 일 입니다.**

○ 납부기한 마감일 전에 예금 잔액을 확인하십시오. 예금 잔액이 부족하면 자동이체납부가 되지 않으므로 관할 시·군·구에 확인 후 직접 은행에 납부하여야 합니다.

○ 지방세 납부명세는 예금통장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귀하께서는 자동계좌이체를 신청하셨으므로 이 고지서로 지방세 납부장소(전국 은행, 우체국, 새마을금고, 신용협동조합, 산림조합)에서 납부하실 수 없습니다.

∞ 시·군

**납세고지서 ( 분)** (납세자용)

| 납세번호 | 과세기관 | 검 | 회계 | 과목 | 세목 | 연도 | 월 | 구분 | 읍면동 | 과세번호 | 검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| | | | | | | | | |

납 세 자: 납세자번호:
주 소:

과세대상:

| 세 목 | 납부할 세액 | 부과내역(과세표준) | 세율 |
|---|---|---|---|
| | | | |
| | | | |
| | | | |
| 합 계 | | | |

| 납부기한 |
|---|
| 까지 |

| 담당자<br>문의처 |
|---|

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년 월 일

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

※ 지방세 납부결과는 고지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.

210㎜×297㎜(CP지 90g/㎡)

## 유의사항

1. 지방세액 산출근거

| | |
|---|---|
| 과세근거 | ▪「지방세법」제23조제2호, 제24조제2호 및 제34조부터 제39조까지 |
| 납세의무자 | ▪「지방세법」제24조제2호에 따른 면허를 받는 자(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) |
| 납부지연가산세 | ▪ 「지방세기본법」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3%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, 납세고지서별·세목별 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.66%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(최대 60개월까지)됩니다.<br>※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|

2.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독촉장(50일 이내)이 고지되며, 독촉장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의 압류 등 체납처분을 받게 됩니다.

3.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(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)부터 90일 이내에 과세관청(시·군세의 경우에는 시장·군수에게, 시·도세의 경우에는 시·도지사에게)에 이의신청 또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※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.